■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I. 일반기준

- 1. 주의표지 · 규제표지 · 지시표지 · 보조표지
- 가. 안전표지의 바탕·테·문자와 기호의 색채는 그림에 의한 것 외에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보조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흑색으로,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예외로 한다.
 - (1) 규제표지 중 정차·주차금지표지 및 주차금지표지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진입금지표지 및 일시정지표지의 바탕은 적색으로, 문자 및 기호는 백색으로 한 다.
 - (2) 지시표지 중 일방통행표지의 기호부분은 청색바탕에 백색기호로, 문자부분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한다.
 - (3) 보조표지 중 구간시작 표지, 구간내 표지 및 구간끝 표지의 기호는 적색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표지의 바탕은 황색으로 한다.
- 나. 주의표지 중 신호기표지의 기호는 필요에 따라 횡으로 할 수 있고, 위 또는 좌로부터 적색·황색·녹색의 순으로 한다.
- 다. 안전표지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규격보다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확대

도로종별	확대비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1.5배, 2배, 2.5배		
일반도로	1.3배 1.6배, 2배		

(2) 축소

표지종별	축소비율
규제표지·지시표지	0.5배 또는 0.8배

- 라.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 이 정한다.
- 마. 문자의 형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

(1) 한글

위험, 통행금지, 천천히, 정지, 양보, 횡단금지, 주차, 일방통행, 시내전역, 일요일, 공휴일, 제외, 시간, 차둘수 있음, 우선도로, 안전속도, 안개지역, 눈비, 주의, 차로엄수

(2) 영문 및 숫자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 1 2 3 4 5 6 7 8 9 0

바. 차량종류의 약칭

규제표지에 부착·설치하는 보조표지에 있어서 차량의 종류를 기재할 때에는 다음 표와 같이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차량의 종류	약칭
승용자동차	택시·승용
승합자동차	버스·노선버스
화물자동차	화물
특수자동차	특수
이륜자동차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

사. 붙이는 방법

- (1) 동일 장소에 2종류 이상의 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의 4각형 백색기판에 2종류 이상의 표지도안을 함께 표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2) 표지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 표지판을 신호기, 전봇대나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할 수가 있다.
- (3) 보조표지는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에 부착하여 설치한다.
- (4) Ⅱ. 개별기준 제4호나목의 만드는 방식란에 따른 보조표지 상 문자는 예시로 서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글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0자 이내의 문자로 제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초과할수 있다.
- (5) 도로여건상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표지의 간격을 가깝게 하여 설치할 수 있다.

아. 반사재료

(1) 표지판은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명을 장치해야 한다.

(2)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지 성능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표지판의 글 자 및 도안 부분에 사용하는 반사지는 초고휘도 또는 광각 초고휘도 성능의 반사지를 사용해야 한다.

유형	반사성능
III	고휘도
IV	고휘도
VIII	초고휘도
IX	광각 초고휘도
XI	초고휘도

비고: 위 표는 한국산업표준[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트}]에 따른 반사지 유형별 반사성능 기준이며, 표지판에 사용하는 반사지는 위 표의 유형별 반사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자. 재질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차. 화살표가 있는 표지의 설치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의 111부터 114까지의 만드는 방식란, 같은 Ⅱ 제2호나목의 212부터 216까지의 만드는 방식란 및 같은 Ⅱ 제3호나목의 305부터 315까지의 만드는 방식란에 따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카. 발광형 안전표지의 설치

안개 잦은 곳, 야간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등에는 표지판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광형 안전표지의 바탕색은 무광흑색으로, 주의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황색으로, 규제 및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

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1) 설치기준

비·안개·눈 등 거친 날씨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교통혼잡이 잦은 곳,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보호구역 등에 설치한다.

(2) 만드는 방식

Ⅱ. 개별기준의 제2호에 따른 규제표지 중 224번 최고속도 제한표지를 전광판이나 발광형 안전표지를 이용해 바탕색은 무광흑색으로, 테는 적색으로, 숫자는 백색으로 빛을 발해야 하고, 숫자는 10단위로 증감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산장치 또는 수동으로 최고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파. 관리기준

표지판에 사용된 반사지는 한국산업표준(KS T 3507)에 따른 유형별 반사성능 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 노면표시

가. 표시

- (1) 노면표시는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또는 발광형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표지병(標識瓶)을 설치할 수 있다.
- (2) 자전거횡단표시를 횡단보도표시와 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접하는 측의 측선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 (1)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정차금지지대표시, 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의 테두리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노란색
 - (2)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파란색
 - (3)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보호 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빨 간색 또는 흰색
 - (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 (5) 그 밖의 표시: 흰색
 - (6) 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다. 문자의 형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

(1) 한글

전체히 학교앞 종로 영등로 서대문 성산대교 김포공항 고속도 남대문 시청 노랑전

(2) 숫자

1234567890

라. 반사재료

- (1) 노면표시를 할 때는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반사장치를 해야 한다.
- (2)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반사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및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 (3) 노면표시 반사재료의 반사성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관측각	<u>-</u>	최소	최소재귀반사성능			
조사각			$[mcd/(m2 \cdot lx)]$			()]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적색	
88.76	1.05°	설치 시	240	150	80	46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 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 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1.24	(2.29	젖은 노면 (습윤)시	100	70	40	23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 럽표준(EN1436)에서 정하 는 방법에 따른다.

마. 화살표가 있는 표지의 설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510부터 512까지, 512의3, 513, 514 및 537부터 541까지의 만드는 방식란에 따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바.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는 차로 폭에 따라 기본규격보다 0.5배에서 2배까지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사. 관리기준

노면표시에 사용된 반사재료의 최소재귀반사성능은 최소 기준(백색 100,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아. 발광형 소재 노면표시의 설치

안개가 잦은 곳,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또는 도로의 구조로 인해 가시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곳 등에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소재를 사용하여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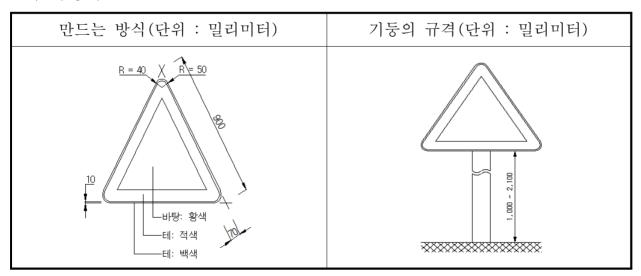
자. 지명 등 안내를 위한 문자 설치기준

- (1) 진행 방면 및 방향별 진행 금지를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함께 문자로 행정구역 명, 공공시설명 또는 도로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표지규칙」 제3조에 따른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및 안내표지에 사용되는 글자와 노면표시를 일치시켜 설치할 수 있다.
- (2) 하천, 호수, 명승고적, 주요 관광지, 고속철도역 및 공항 등 친숙하게 사용되는 지명 및 시설명과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에 따른 차종(예시: 버스, 화물차, 승용차 등), 비상주차를 위한 시설명(예시: 졸음쉼터, 비상주차대) 및 고속도로진 ·출입 관련(예시: 하이패스, 표 받는 곳) 내용을 문자로 설치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1. 주의표지

가. 공통기준



나. 종류별 기준

일련 번호 종 류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표시하는 설치기준 및 장소 뜻	
--------------------------------	------------------------	--

101	+ 자형 교 차로 표지	90 80 90 260	· + 자형 교차로가 있 음 을 알 리 는 것	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102	T 자 형 교 차로표지	240	· T 자 형 교차로가 있 음 을 알 리 는 것	·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 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설계속도 20 30 40 50 60 (km/h) 볼수 있는 거리 20 40 60 80 11 (미터이하) 0
103	Y 자 형 교 차로 표지	120°	●Y자형 교 차로가 있 음을 알 리는 것	
104	ㅏ 자 형 교 차로 표지	80 120 200	·	·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 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 교차로에 설치 설계속도 20 30 40 50 60 (km/h) 볼수 있는 거리 20 40 60 80 11 (미터이하)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 의 도로우측에 설치

ㅓ 자 형 교 차로 표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ㅓ 자 형 교차로가 있 음 을 알 리 는 것	
우 선 도 로 표지	40 140 50 140 50 12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 우선도 로 에 서 우선도로 가 로 와 도로 와 말 리 는 것	· 우선도로가 우선도로 아닌 도로 와 교차하는 경우에 설치 · 교차로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 의 우선도로 우측에 설치
우합류도 로표지	455 40 88 88 88	· 우 합 류 도로가 있 음을 알 리는 것	· 합류도로가 있는 지점에 설치 · 합류도로 전 50미터 내지 200미 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좌합류 도로표지	007 008 007 007 008 007 007 007 007 007	· 좌 합 류 도로가 있 음을 알 리는 것	· 합류도로가 있는 지점에 설치 · 합류도로 전 50미터 내지 200미 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회전형 교차로 표지	50 600	•회전형 교 차 로 을 있 음 을 알 건	로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110	철길건널 목표지		· 철 길 건 널목이 있 음을 알 리는 것	· 주행속도 한 간격: · 철길건널	목이 있는 <i>지</i> 가 높은 구건 으로 중복설치 !목 전 50미터 도로우측에 설	남에는 적당 내지 120
110 의2	노 면 전 차 주의표지	350	 차 마 와 노면전차 가 교차 하는 지 점이 있 음을 알 리는 것 	점에 설 ² · 노면전치 120미터 우측에 ^	- 교차로 전 사이의 도로	50미터에서 중앙 또는
111	우 로 굽 은 도로표지	R=130 R=10 R=70 R=70 R=70 R=70	· 우로굽 은도로가 있 음 을 알 리 는 것	와 같을 설계속도 (km/h) 60 50 40 · 굽기 시	I	도로교각 (도이상) 45 전 30미터
112	좌로 굽은 도로표지	R=10 R=130 R=70 R=70 200 60 260	· 좌로 굽 은 도로 가 있음 을 알리 는 것	와 같을 설계속도 (km/h) 60 50 40 · 굽기 시	과 도로 교각 때 설치 곡선반경 (미터이하) 150 100 60 작하는 지점	도로교각 (도이상) 45 전 30미터
113	우 좌 로 이 중 굽 은 도 로 표 지	014 R70 R10 R10 R10 R10 R10 R10 R10 R10 R10 R1	· 우 좌 로 이중 급 은 도로 가 있음 을 알리 는 것	때 설치 ·굽은 도	이중 굽은 도 로 상호간의 라 같을 때 설.	직선거리가 치 상호간의 Y리 기하) 0

				T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14	좌우로		· 좌 우 로	· 좌우로 이중 굽은 도로가 있을
	이중굽은	중굽은	이중 굽	때 설치
	도로		은 도로	·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리기
	표지		가 있음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교시	60° - R10]	을 알리	설계속도 굽은 도로 상호간의
		(60° H10 R77 88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는 것	(km/h) 직선거리
		 		(미터이하))
				60 100
				50 80
		60 110 60		40 60
		230		·굽기 시작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15	2 방 향 통		• 2 방 향	· 일방통행도로와 2방향 통행도로
	행표지		통 행 이	가 이어지는 지점에 설치
			실시됨을	· 2방향통행이 시작되는 지점 전
		60°	알 리 는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
			것	측에 설치
		<u>60 70 60 </u> 190		
110	스크미커	· · · · · ·	А 7 D	
116	오르막경 사표지			·도로의 오르막경사도가 다음 표
			경사 가	
			20,7	실계폭도 100 80 60 50 40 30 20 2
				(KM/N) 이 이 하
				오르막경 3 4 5 6 7 8 9
		100		사도(%) 1
		60.		· 오르막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
		300		측에 설치
				· 경사가 길 때에는 중간지점 도로
				우측에 중복설치
117	내리막경		· 내리마	·도로의 내리막경사도가 다음 포
111	사표지		경사가	
	1-75, 1		있음을	
			》 ㅁ ㄹ 알 리 는	설계속도 1 0 80 60 50 40 30 20 2 km/h) 0 80 60 50 40 30 20 2
			_ 르 니 L 것	(KM/N) 0
		\/\/\\		오르막경 3 4 5 6 7 8 9
		8/8/K'U9/\		사도(%)
				·내리막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60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
				측에 설치
		·		· 경사가 길 때에는 중간지점 도로

				우측에 중복설치
118	도로폭이 좁아짐표 지	50 100 50 200	· 도로의 폭이 좁 아 짐 을 알 리 는 것	·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나 3차로
119	우측차로 없어짐표 지	50 100 50 200	로의 없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 측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구행속도가 높을 경우는 중복하여 설치 차로가 없어진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20	좌측차로 없어짐표 지	50 1100 50 200	· 좌측 차 로 없어 짐을 알 리는 것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좌 측차로가 없어질 때 설치 구행속도가 높을 경우는 중복하여 설치 차로가 없어진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 도로우측에 설치
121	우측방통 행표지	80 60 60	· 도로의 우측방향 으로 통 행하여야 할 지점 이 있음 을 알리 는 것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 · 장애물이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22	양측방통 행표지	19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 동일 행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하 하 의 의 일 등 가 있 을 는 것 을 가 있 하 하 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 · 장애물이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 도로우측에 설치
123	중앙분리 대시작표 지	02 08E	· 중 앙 분 리 대 가 시작됨을 알 리 는 것	·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중앙분 리대 또는 도로우측에 설치
124	중앙분리 대끝남표 지	060	· 중앙분 리대가 끝남을 알리는 것	치
125	신호기표 지	R40 R70 07 07 07 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 신호기 가있음을 알리는 것	 · 시야장애로 신호기의 위치를 사전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 · 신호기가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26	미끄러운 도로표지	350 150 150 100 100	· 자동차 등이 미 끄러지기 쉬운 곳 임을 알 리는 것	· 속도를 내기 쉽고 미끄러지기 쉬운 구간 시작지점에 설치 ·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이 빈번한 지점에 설치 · 기상조건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에 설치 ·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27	강변도로 표지	240	일 변 이 강변, 해 변, 계곡 등 추락	 도로의 일변이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에 설치 강변, 해변, 계곡 등 추락위험지점 전 30미터에서 200미터의도로우측에 설치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시, 자동차를 자전거로 변경하여 설치
128	노면고르 지못함표 지	400	·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알리는 것	 ·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고르지 못한 노면이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29	파속 방지 턱, 고원식 횡단보도 (주변 차 로보다 약 간 높게 만든 횡단 보도를 말 한다. 이하 같다), 고 원식 교차 로 표지	02 Q 44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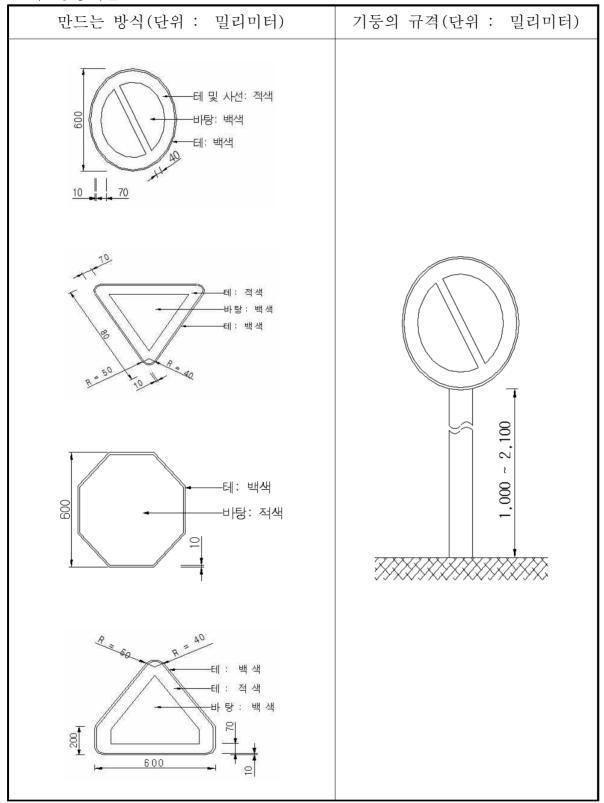
130	낙석도로 표지 삭제 <200	7.9.28>	 낙석의우려가있는 장소가 있음을 알리는 것	
132		250	· 횡단 대각 단 를 한 가 을 근 보 포 다 있 알 것	·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다음 의 경우에 설치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비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 로(신호기 유무에 관계없이 설 치한다) ○횡단보도 전 50미터 내지 120 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33	어린이보 호표지	360	的 영 의 로 단 가 을 는 유 등 학, 로 린 이 등 이 지 및 이 구 이 에 린 는 아 행 횡 도 음 리 교 원 통 원 어 놀 린 호 근 이 명 의 로 단 가 을 는 유 등 학, 로 린 이 등 이 지 및 이 구 이 에	보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 •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 교의 출입구로부터 1킬로미터

104	리 코 크		있음을 알리는 것	기기디어 트웨시 비비귀 거야세
134	자전거 표 지	26 USI SALE SALE SALE SALE SALE SALE SALE SALE	· 자 전 거 등의 통 행이 많 은 지점 이 있음 을 알리 는 것	 · 자전거등의 통행이 빈번한 경우에설치 · 자전거등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 및 구역 전 50미터~200미터 사이의 도로우측에 설치
135	도로공사 중표지	8 180 180	· 이나 면 공 사 나 을 있을 는 것 을 는 것	설치
136	비행기표 지	320	· 비행기 가 이착 륙 하 는 지 점 이 있 음 을 알 리 는 것	
137	횡 풍 표 지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 강한 횡 풍의 우 려가 있 는 지점 이 있음 을 알리 는 것	· 횡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치 ·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 전 50 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 에 설치

138	터널표지	R=100 R=100 R=100 R=100 R=100 R=100 R=100	· 터널이 있음을 알 리 는 것	· 터널이 있는 경우에 설치 · 터널입구 전 50미터 내지 200미 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38 의2	교 량 표 지	300 80 460	있 음 을	· 교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 · 교량이 있는 지점 전 5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39	야 생동물 보호표지	0EZ 320	· 야 생 동 물의 보 호 지 역 임을 알 리는 것	· 야생동물의 보호지역에 설치 · 보호지역의 시작전 및 끝난후 · 지점 10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40	위 험 표 지	위험 DANGER DANGER	· 도로교 통상 각 종 위험 이 있음 을 알리 는 것	·위험지역에 설치 ·위험지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 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141	상 습 정 체 구간표지	300	구 간 임	· 상습정체구간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설치 · 상습정체구간 전 5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2. 규제표지

가. 공통기준



나. 종류별 기준

일련 번호	종 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	-----	------------------	--------	-----------

201	통행금		·보행자 및 차	·보행자 및 차마 등의
	지표지		마 등의 통행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통행금지)》圖	것	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통행금지구간 ·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
		300		표지를 부착·설치
202	자동차		· 자동차의 통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통행금		행을 금지하	하는 구역, 도로의 구
	지표지		는 것	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
				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통행금지구간 · 기간
		280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
				표지를 부착·설치
203	화물자		·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동차통		의 통행을 금 기치는 거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행금지		지하는 것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
	표지			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필요한 경우 통행금지
				구간, 기간, 이유, 차량
		340		총중량 및 차체길이를
		340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
204	승합자		· 수 하 자 도 차	착·설치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204	8 보기 동차통		(승차정원 30	금지하는 구역·도로의
	행금지		명 이 상 인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
	표지		것)의 통행을	이나 우측에 설치
			금지하는 것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
				표지를 부착 · 설치
	.1 = 1	350		
205	이륜자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동차및		및 원동기장	장치 자전거의 통행을
	원동기		치 자전거의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장치자		통행을 금지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
	전거통		하는 것	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행금지			우측에 설치
	표지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
		300		및 이유들 병시안 모조 표지를 부착·설치
				표시할 무역 '결시

205 의2 이 동 장 치 통 행 금 지 표 지	210	· 개인형 이동 장치의 통행 을 금지하는 것	·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 양 또는 우측에 설치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206 자 동 차·이 륜자동 차및원 동기장 치자전 거통행 금지표 지	180 0EI	· 자동차 · 이 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2개 차종의 통행을 금지 할 때에는 해당 차종을 표시한다.	· 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 앙 또는 우측에 설치 · 통행금지구간 ·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 표지를 부착 · 설치		
206 이 륜 자 의2 동차·원 동기 장 지 자 전 거 및 개 인 형 이 동 장 지 통 행 금 지 표 지	140 0027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 장치의 통행 을 금지하는 것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 장치의 통행을 금지하 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 에 설치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 지를 부착·설치		
207 경 운 기 · 트랙터 및손수 레통행 금지표 지	170 08 186 196	· 경운기 · 트랙 터 및 손수레 의 통행을 금 지하는 것	· 경운기 · 트랙터 및 손 수레의 통행을 금지하 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 에 설치 · 통행금지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 표지를 부착 설치		
208 삭제 <200					
209 삭제 <200'	209 삭제 <2007.9.28>				

210	자전거		· 자전거등의 통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
	통행금		행을 금지하	지하는 구역, 도로의
	지표지		는 것	구간 또는 장소의 전
				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113 208		· 통행금지구간 ·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
		[<u>350</u>]		조표지를 부착·설치
211	진입금	,S/	·차의 진입을	
	지표지	kt 299	금지하는 것	구역 및 도로의 중앙
		70 40 8		또는 우측에 설치
				· 진입금지기간 및 이유
		진입금지		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 8		부착·설치
		50 ₁ 500 50 ₁		
212	직진금		·차의 직진을	· 차의 직진을 금지해야
	지표지	R=300 R=290	금지함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V60.		설치
010	A =1 =1	Ц60	-1 -1 4 -1 -1	
213	우회전	R=300		· 차의 우회전을 금지하
	금지표 지	R=10 R=290 R=220	하는 것을 금	
		8[/ A=90]	지하는 것	설치
		3 ((R=30° 60))		
		30		
		60, 175		
01.1	- 기 = 기 - 기	265	- 1 - 1 - 1 - 1 - 1	10 2220 222
214	죄회전 그기고	R=300 R=220	· 차가 좌회전	
	금지표 지	R=290	하는 것을 금 지하는 것	는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R=90	시야는 것	·편의
		R=30		
		R=30 P		
		175 60		
		265		
215	산체 790	007.9.28>		
210	7 /11 \20	701.0.407		

216	유턴금		· 차마의 유턴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
210	지표지	R=300	을 금지하는	= =
	시파시	R=290		
		R=105 R=46	것	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
		R=10 \		치
		120		
		60,50,50,60,		
		<u> </u>		
217	앞지르		·차의 앞지르	· 차의 앞지르기를 금지
	기금지		기를 금지하	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표지		는 것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
		R=300		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R=290 R=220		설치
		8 A60° R=220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설
				치
				·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
		R=110		도로는 200미터, 지방
		60 ₁₁ 20 150		도로는 300미터, 자동
		130		차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설치할
	-1 -1		-2 -2 -2 -2	수 있다.
218	정차 ·		· 차의 정차 및	· 차의 정차 및 주차를
	주차금		주차를 금지	
	지표지		하는 것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R=300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
				로우측에 설치
		《 ⁴⁵ 정 차 금 지 》 ⑧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
				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R=290 R=220		·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도
		56, 30		로는 200미터, 지방도
		400		로는 3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간
				격으로 중복 설치
				, 0 1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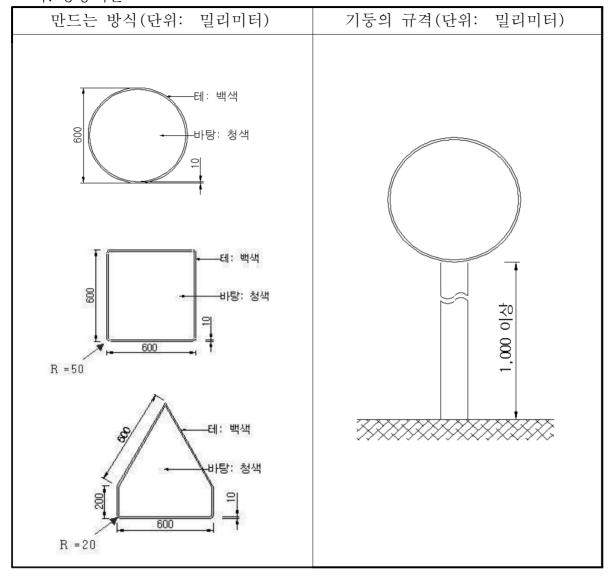
219	주차금		· 차의 주차를	·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지표지	D=200	금지하는 것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	R=300 R=290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
		R=220		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끝 또는
		《 (추차금지) 🛚 🗟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
				착·설치
				·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
				도로는 200미터, 지방
		170 40 400		도로는 300미터, 자동
				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설치
220	차중량	20 <u>20</u> 20 ++1 20	· 표지판에 표	· 표지판에 표시된 중량
	제한표	EUTHE	시한 중량을	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
	지	20日	초과하는 차	을 금지하는 장소의 우
			의 통행을	측에 설치
			제한하는 것	
		R=15		
		R=60 R=40		
		120 T00 80 300		
001	리노시		ചചച്ചിച്ച ച	크리티시 크리티 노시
221	차높이		· 표지판에 표	· 표지판에 표시된 높이 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
	제한표	120 60 R=300	시한 높이를	을 금지하는 도로의 우
	지	R=290	초과하는 차	를 다시아는 <u>모모</u> 기가 측 또는 구조물의 전면
		R=10 120° R=220	(적재한 화	에 설치
		// / ~ × × Y \\	물의 높이를	· 높이제한은 차도의 노
			포함)의 통	면으로부터 높이 4.7
			행을 제한하	미터 미만의 구조물이
			는 것	있는 경우에 설치하되,
				당해 구조물 높이에
		120		20센티미터를 뺀 수치
		1120		를 표시하여 설치
222	차폭제		· 표지판에 표	· 표지판에 표시된 폭을
	한표지	R=300 R=290	시한폭이 초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ا عدی	R=55 R=220	과된 차(적	
		R=20		
		R70 M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재한 화물의	, _ , _
			폭을 포함)	측에 설치
		4 5 06 / 1-1	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100 50 80 100		
		330		

223	차간거	300	· 표지판에 표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
	리확보		시된 차간거	거리 이상을 확보하여
	표지		리 이상 확보	야 할 도로의 구간 또
		//sa \\\\	할 것을 지시	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
			하는 것	에 설치
				·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
				え]
		200		
		150 150		
224	최고속		·표지판에 표	·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
	도제한		시한 속도로	를 제한하는 구역, 도
	표지	D-200	자동차 등의	
		R=300 R=220	최고속도를	내의 필요한 지점 우측
		R=290	지정하는 것	에 설치
				· 구역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역 내 표지는 시가
				지도로는 200미터, 지
		L 110 , L 110 J		방도로는 400미터, 자
		260		동차 전용도로는 800
				미터 간격으로 중복 설
				치할 수 있다.
225	최저속		· 표지판에 표	· 자동차 등의 최저속도
	도제한		시한 속도로	
	표지	R=300	자동차 등의	
		R=290 R=220	최저속도를	A = .11 -11 -1
			지정하는 것	·구역의 시작 및 끝의
			1012 /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R#35		·구역 내 표지는 시가
		8		지도로는 200미터, 지
		130 1: 130 1 300		방도로는 400미터, 자
		300		동차전용도로는 800미
				터 간격으로 중복 설치
000	기케크		그 기 기 = 1 = 1	할 수 있다.
226	서행표		・차가 서행하	
	지	800	여야 할 장	
		96 20 96 20 96	소임을 지정	의 철요한 시심 누극에 물설치
		`\\\\\\\\\\\\\\\\\\\\\\\\\\\\\\\\\\\\\	하는 것	설시 · 서행구간이 30미터 이
		\\천천히 <u>/</u> /		상일 때는 시작과 끝
		SLOW/		지점에 보조표지를 설
				치
				· 서행구간이 100미터
		R=40 R=50 30		이상일 때는 100미터
				간격으로 구간 내 표지
				를 중복 설치

227	일시정	400	· 차가 일시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지표지	400 170 60 170	정지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
			할 장소임을	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지정하는 것	
		STOP		
		85 85 85 120 120 120		
228	양보표	800	· 차가 도로를	· 차가 도로를 양보하여
	지	160 45 160	양보할 장소	야 하는 도로의 구간
			임을 지정하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
		\\양 보//	는 것	측에 설치
		\\YIELD/		
		R=40		
		R=50 (90)		
229	삭제 <20	007.9.28>		
230	보 행 자	10	·보행자의 보	·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
	보 행 금		행을 금지하	하는 도로의 구간 및
	지표지		는 것	장소내에 필요한 지점
		0009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250		
231	위험물		·위험물 적재	·위험물을 적재한 차의
	적 재 차	R=300	차량[별표 9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
	량 통 행	R=290	(주) 제6호	의 구간 우측에 설치
	금지표	R=220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지		하나에 해당	
			등을 운반하	
			는 자동차를	
			말한다]의	
		260	통행을 금지	
			하는 것	

3. 지시표지

가. 공통기준



나. 종류별기준

	중파글		I	
일런 번호	종 류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301	자동차		· 자동차 전용	·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
	전용도		도로 또는 전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로표지	051	용구역임을	도로 우측에 설치
			지시하는 것	· 구간의 시작 및 끝에 보
		130		조표지를 부착·설치
		전 용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
		30 30		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
		130 <u>80</u> 130 <u>80</u> 1		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
		350		에 설치
302	자 전 거		· 자전거 전용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
	전용도		도로 또는	간 또는 장소 내의 필
	로표지		전용구간임	
			을 지시하	
			는 것	보조표지를 부착 · 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
				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 차로 부근의 도로우측
		₩ 쩐 쩐 쩐 용 / 📆		시오 구는의 <u>고</u> 오구드 에 설치
				개 근소기
		432		
303	자 전 거	110 210	· 자전거 • 보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
	• 보 행		행자 겸용	
	자 겸용	ΓΩ	도로임을 지시하는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 에 설치
	도로표		시시아년 것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지	R=58 R=42		보조표지 부착 설치
		L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
				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
				차로 부근 도로우측에 설치
0.00	1 =1 =1	280 , 110		
303	노면전			· 노면전차전용도로의 구
의2	차 전용 도로 표		통행할 수	
	지			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1)		도로 임을	· 구간의 시작 및 끝에는
			알리는 것	보조표지를 부착 · 설치
		전용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
		3080 130 8030		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
		<u>3080 130 8030</u> 350		차로 부근의 노면전차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304	회전교	D201.0	· 표지파이 하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
	차로표	R=10		진행하여야 할 지점의
	지	(60.		도로 우측에 설치
			회전 진행할	
		R=210 R=150	것을 지시하	
		R=180	는 것	
		50 60		
305	직진표		· 차가 직진할	·차가 직진할 지점의 도
	지	60.		로우측에 설치
			는 것	
		(<u>R=20</u>) – 8		
		5220		
		[80]		
306	우회전	<u> </u>	・차가 우히저	· 차가 우회전할 지점의
	표지	390		도로우측에 설치
	JL		시하는 것	
		R=130	, , , ,	
		60.		
		80 R=300 R=290		
307	좌회전	390		· 차가 좌회전할 지점의
	표지	R=130		도로우측에 설치
		R=130	시하는 것	
		60°		
		R=300 80		
000	2) 2) H)	R=290	크] -) -)	그리 기기 ㅠ 1 스크 -1
308	직진및			· 차가 직진 또는 우회전
	우회전 표지	60-7	보는 우회선 할 것을 지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서치
	표시		일 것들 시 시하는 것	· 결시
		000	1791年 次	
		R=100		
		170, 280 1 350		

309	직 진 및 좌 회 전 표지	R=170 R=100 R=100 350		· 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309 의2	좌 회 전 및 유턴 표지	R=130 R=140 R=70 R=290 R=290 175 70 340	또는 유턴할	·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 는 중앙에 설치
310	좌우회 전표지	550 R=170 60° R=100 80		· 차가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311	유턴표기	R=140 370 450	할 것을 지 시하는 것	·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312	양측방 통행표 지	R=20 60 001 08 001 08 001 08 001 08 001 08 001 001	방향으로 통	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

313	우측면	^	·차가 우측면	·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
313	두 년 통행표 지	45 - R=20	· 사가 누득된 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 는 것	· 사가 구득된으로 중앙 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314	좌측면 통행표 지	R300 R290	· 차가 좌측면 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 는 것	·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 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좌측 또는 중앙에 설치
315	진행방 향별통 행구분 표지		· 차가 좌회 전·직진 또 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 는 것	· 차가 좌회전·직진 또 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 로우측에 설치
316	우회로 표지	116 266 08 072 86	이 금지된	· 차가 우회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317	자 전 거 및 보 행 자 통 행 구 분 도 로표지	061 290 15	· 자전거 · 보 행자 겸용 도로 에서 다 로 에서 다 전거등과 보 행 자 다 분 하 도록 지 시 하 는 것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 로에서 자전거등과 보 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노면에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 계석,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시설 등으로 구분 된 도로에 설치 ·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구분방법에 따라 자전거 · 보행자 도안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

318 자 전 7 전 용 차 로표지		·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지시 하는 것	7,00 100 101
319 주차경 표지 320 자전거	R=40	음을 알리는 것	·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 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 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주 차 정 표지	R=38 R=22 P= 22 P= 25 P= 28 R=55 P= 28 P= 28	장이 있음 을 알리고 자전거주차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
320 의2 이 동 ² 치 주 ³ 장표지	270		도로 우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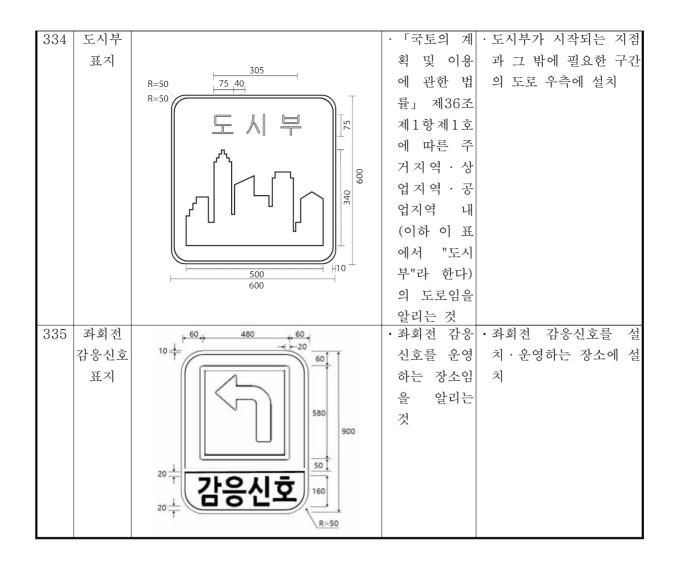
320의	어린이		· 어린이 보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	통 학 버		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
	스	177 - 61	어린이통학	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
	승하차	136 61	버스가 어	차 및 주차할 수 있는
	표지	145 135	린이 승하	장소 및 필요한 지점
	,		차를 위해	오고 및 필요한 사람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
			표시판에	에 설치
		150	표시된 시	
		### ### #############################	간동안 정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
			차 및 주차	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113 374 113	가 및 무자 할 수 있도	부착·설치
			록 지시하	
320의	어린이		는 것 · 어린이 보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	승하차		구역에서	어린이 모모두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자동
•	표지		어린이통학	차등이 어린이의 승하
	31.	174		차를 위해 정차 및 주
			버스와 자 동차등이	
		103		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
		136 61	어린이 승하차를 위	일요만 시점 모든 구산 의 도로 우측에 설치
		260		
		185	해 표지판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
		- - 어린이 승하차 :1	에 표시된	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시간동안	부착·설치
		490	정차 및 주	
			차할 수 있	
			도록 지시	
321	보행자		하는 것	· 보행자전용도로의 입구
041	모생사 전용도		도로임을 지	
	로표지		고도함들 시 시하는 것	기다 필요한 기신의 도 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
	<u> </u> 포표시		1791年 次 	- 도구국 조근 중앙에 걸 - 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 구산의 시작 및 ᇀ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보행자전용도로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
		₃₅ 50		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
		500		로부근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321 92	보행자 우선도 로표지	8章 보행자우선도로 R=50		·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 나 그 밖에 필요한 구간 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 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 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 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 로 부근의 도로 우측 또 는 중앙에 설치
322	횡 단 보 도 표 지	이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 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 로양측에 설치
323	노인보 호표지 (노인 보호구 역안)	TO H S	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	· 노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
324	어린이 보호표 지 (어 린이보 호구역 안)	320 어린이보호 70,60,40 460	구역 안에서	·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324 의2	장 애 인 보호표 지(장애 인 보호 구 역 안)	장애인보호 70,60,40 460	· 장애인보호 구역 안에서 장애인의 보 호를 지시하 는 것	· 장애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장애인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

325	자 전 거 횡 단 도 표지	R=50 R=10 R=70 R=50 R=50 R=50 R=50 R=50 R=50 R=50 R=5	·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지 시 하 는 것	·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326	일 방 통 행 표 지	100 10	· 우측방향으 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 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 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 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 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 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327	일 방 통 행 표 지	R=50 R=40 R=20 R=40 R=50 R=40 R=40 R=50 R=40 R=40	· 좌측 방향으 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 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 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 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 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328	일 방 통 행 표 지	R=50 R=40 B=20 B=20 B=20 B=20 B=20 B=20 B=20 B=2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 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 설치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 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 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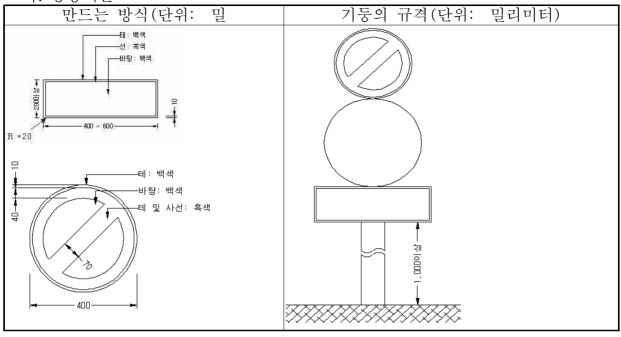
329	비보호 좌회전 표지	R=15 R=130 006 R=15 R=20	·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 서 오는 차 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 도록 좌회전 을 조심스럽 게 할 수 있 다는 것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
330	버스전 용차로 표지	전용 900	· 버스전용차 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리 는 것	·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 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 측에 설치 ·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하되, 버스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일 반도로의 경우에는 50 미터 내지 100미터 앞 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미터 앞에 설치
331	다인승 차량전 용차로 표지	다인승전용	· 다인승차량 (3인 이상이 승차한 승합 자동차 · 승 용자동차를 말한다)만이 통행할 수 있음을 표시 하는 것	· 다인승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 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 치 ·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하되, 다인승차량 전용 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 지는 200미터 앞에 설 치

331	노면전		· 노면전차만	· 노면전차전용차로에서
<u></u> 2	차 전		통행할 수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용차로		있는 전용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표지	432	차 로 임 을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알리는 것	· 노면전차전용차로를 예
				고하는 보조표지는 일
				반도로의 경우에는 50
				미터에서 100미터 앞
		│		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미터 앞에 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
		90 152 306 152 90		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
				차로 부근의 노면전차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332	통행우	T [] 10	· 백색 화살표	·도로 폭이 좁아 차가
	선표지	원 청색 A ^{60°}] ⁹	방향으로 진	한 대씩 교대로 통행하
		40 <u>R=10/</u>	행하는 차량	는 도로구간에 설치
			이 우선 통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
		009 R=10	행할 수 있	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_	도록 표시하	
		175	는 것	
		<u> </u>		
333	자전거	(⊑4): mm)	·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
	나란히	38.5	에서 2대	
	통행	68 — Re-18	이상 자전	히 통행할 수 있을 정
	허용	18		도의 도로폭이 확보된 구간에 설치
	표지	19.5 (19.20) (· 구간의 시작, 시간 및
			는 것	끝의 보조표지를 부
		170 - 33102 2.5 3		착 · 설치
		18.6 181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
		368.4 10 105.8 170,7 27 170,7 105.8 10		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 차로 부근 도로우측에
		10 105,8 170,7 27 170,7 105,8 10		설치
•	1			- ·



4. 보조표지

가. 공통기준



나. 종류별기준

	6 H E	. 16		
일련 번호	종 류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401	거리표지	R=20 R=10 100m 앞부터 80 80 60 600	· 주의표지, 규제 표지 또는 지시 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 소까지의 거리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 착·설치
402	거리표 지	R=20 R=10 여기부터 500m 원 원 60 ₁ 480 600	· 주의표지, 규제 표지 또는 지시 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 소까지의 거리	
403	구역표 지	R=20 R=10 시내전역 88 80 80 600	· 주의표지, 규제 표지 또는 지시 표지가 표시하 는 내용 구간 또는 구역	
404	일자표지	R=20 R=10 일요일·공휴일제외 50, 500 50 600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 시하는 교통규 제 또는 지시의 일자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 지에 부착·설치

405	시간표	R=20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표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 지에 부착·설치
	'	08:00~20:00 ER	시하는 교통규	
		版	제 또는 지시의	
		600	시간	
406	시간표	<u>R=20</u>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
	지	8=10 <u>)</u> 1시간이내 圖	지시표지가표 시하는 교통규	지에 부착·설치
		1시간이내 차둘수있음 ************************************	제 또는 지시의	
		60 ₁ 480 600	시간	
407	신호등	R=20		·지시표시에 부착·설
	화상태	R=10 \	시하는 지시를	치
	표지	적신호시 역신호시 역신호시	따라야 하는 신 호등화상태를	
		80 440 80 600	표시하는 것	
407	우회전			• 우회전 삼색등 상부에
의2	신호등	우회전신호등	임을 표시하는	부착・설치
	표지	600mm	것	
407	신호등	버스전용		・신호등 상부 또는 기 등에 부착・설치
의3	방 향 표지		량)의 신호등임 을 표시하는 것	
		600mm		
		서울역방향		
		500mm		
407 의4	신호등	보행신호연장시스템	· 신호등 보조장 치가 설치되어	·신호등 보조장치가 설 치된 기둥에 부착·설
74	보조장		있음을 표시하	치
	지	600mm	는 것	
		보행자 작동신호기		
		600mm		
408	전방우	R=20	·그도로와 교차	
	선도로 표지	R=10	하는 전방의도 로가 우선도로	치
	표기	앞에 우선도로 응	모가 구선도도 임을 표시하는	
		6Q 480 60 600	것 것	

409	안전속 도표지	R=20 300 E0	· 주의표지가 표 시하는 뜻을 보 충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	·주의표지에 부착·설 치
410	기 상 상 태표지	만개지역 (8) 440 (8) 600	· 기상상태로 인 하여 도로교통 상 주의가 필요 한 사항을 표시 하는 것	· 주의 표지에 부착·설 치
411	노면상 태표지	P=10 P=10 150 150 150 600	· 노면상태가 도 로교통상 주의 를 필요로 함을 표시하는 것	· 주의표지에 부착·설 치
412	교통규 제표지	R=20 R=10 차로엄수 80, 440, 180 600	· 주의표지가 표 시하는 뜻을 보 충하여 도로교 통상의 규제내 용을 표시하는 것	·주의표지에 부착·설 치
413	통행규 제표지	R=20 R=10 건너가지마시오 의 500 의 500 600	· 규제표지가 표 시하는 뜻을 보 충하여 도로교 통상의 통행규 제 내용을 표시 하는 것	· 규제표지에 부착·설 치
414	차 량 한 정표지	R=20 R=10 승용차에 한함 800 50 500 50 600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 시하는 교통규 제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차의 종류를 한정하 는 것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 지에 부착·설치

415	통행주 의표지	유=20 R=10 속도를줄이시오 60 50 50 600 50	· 주의표지가 표 시하는 뜻을 보 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 항을 표시하는 것	· 주의표지에 부착·설 치
415 의2	충돌 주 의 표 지	Re10 중 돌 주 의 8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 는 지시표지에 부착· 설치
416	표지설 명표지	R=20 R=10 터널길이 258m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 주의표지, 규제 표지 또는 지시 표지가 표시하 는 시설 또는 장 소에 대하여 보 충할 사항을 표 시하는 것	또는 지시표지에 부
417	구간시 작표지	R=20 R=10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 시하는 교통의 규제 · 지시가 행하여지는 구 간의 시작을 표 시하는 것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 지에 부착·설치
418	구간내 표지	70 60 4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 시하는 교통의 규제 · 지시 가 행하여지는 구 간임을 표시하 는 것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 지에 부착·설치
419	구간끝 표지	70 60.40 70 05 06 40 70 05 06 60 40 70 06 60 40 70 06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 시하는 교통의 규제지시가 행 하여지는 구간 의 끝을 표시하 는 것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 지에 부착·설치

			I	
420	우방향	R=20 400	· 규제표지 또는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
	표지	R=10	지시표지가 표	지에 부착·설치
			시하는 노선,	
		00.0	시설 또는 장소	
		[50] 300 [50]	가 우측방향임	
		400	을 표시하는 것	
421	좌방향	R=20 400	· 규제표지 또는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
	표지	R=10 400	지시표지가 표	지에 부착·설치
	,	60 ° R=10	시하는 노선,	
			시설 또는 장소	
		7	가 좌측방향임	
		50 300 50	을 표시하는 것	
		400	三 五百年 次	
422	전방표	Pe-0 40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
	지	40	지시표지가 표	지에 부착·설치
		200	시하는 노선,	
		400	시설 또는 장소	
		40	가 전방임을 표	
		전방 50M □ ®	시하는 것	
		40		
		50 300 50		
		400		
423	중량표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	R=20	표지 또는 지시	또는 지시표지에 부
		(R=10) 4	표지가 표시하	착·설치
		3.5t	는 뜻 중 중량	
		400	에 대한 보충사	
			항을 표시하는	
			것	
424	노폭표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	400		또는 지시표지에 부
		61 T	표지가 표시하	착ㆍ설치
		> 3.5m ⟨२] 🖺	는 뜻 중 노폭	
		≥ 3.5m ≤ = = = = = = = = = = = = = = = = = =	에 대한 보충사	
			항을 표시하는	
			것	
425	거리표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	400		또는 지시표지에 부
		61 1	표지가 표시하	착·설치
			는 뜻 중 거리	
		100m	에 대한 보충사	
		€ 41 T	항을 표시하는	
			것	
426	삭제 <2	007.9.28>		

427	해제표 지	하는 전에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	· 교통규제 또는 지시가 해제됨 을 표시하는 것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 지의 규제 또는 지시 내용 바탕에 사선을 겹치게 하여 제작·설 치 · 해제되는 규제 또는 지시모양은 사선보다 엷게 할 것
428	견인지 역표지	견인지역 ⑤ 550	·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자동차 를 견인하는 지 역임을 표시하 는 것	· 주차금지표지에 부 착·설치
429	삭제 <20	011.1.21>		

5. 노면표시

일련 번호	종 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번호 501	중표시무전전전	15-20 15-20 10-15	·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 · 황색실선은 차다의 없음을 대한 성인 한다는 것 하다는 어느로 함께 점이 되었다. 항생 의교 시작으로 다 집행 이 보다는 그 이 하는 그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차도 폭 6미터 이상인 도로 에 설치하며, 편도 1차로도로의 경우에는 황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황색복선 또는 황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 ·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 ·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의 중앙에 실선만을 표시할 때에는 황색복선으로 설치
503	차선표 시	$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도로구간 내의 차 로의 경계를 표시 하는 것 · 백색실선은 진로	· 편도 2차로 이상의 차도구 간 내의 차로 경계를 표시

			경할 수 있음을 표 시하는 것	
504	전용차 로표시	$ \begin{array}{c} 15 \\ \\ \\ \\ \\ \\ \\ \\ \\ \\ \\ \\ \\ $	전용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다만, 전용차로제가 시행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그 외의 시간까지 운영하는 구간은
504의2	노 면 전 차 전용 로 표시	1,200 L. E. S. OOO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도 록 궤도(선로)의 중앙에 노 면전차전용 노면표시 설치 · 노면전차 전용차로에는 일 반차로와 구분하기 위해 청 색 이중실선을 설치하고 전 일제로 운영 · 노면전차 전용차로 중 일반 차로와 구분하기 위한 연석 등이 설치된 곳에는 청색

1				이중실선 생략
505	길 가 장 자 리 구 역 선 표 시	15~20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표시하는	구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506	진로변 경제한 선표시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 는 차의 진로변경 을 제한하는 것	
507	진 로 변 경 제 한 선표시	10~15 10~15 27 1 10~15 21 10~15 21 1 = \(\ \ \ \ \ \ \ \ \ \ \ \ \ \ \ \ \	· 차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 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구 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508	진 로 변 경 제 한 선표시	$ \begin{array}{c c} 50 & 10 \\ \hline & 10 \\ \hline & 10 \\ \hline & 17 \\ \hline & 20 \\ & 1z = 300 \end{array} $		정되는 경우 도로가 분리
509		020. 10. 7.>	의기 스윈코의나	그리크 키린 스윙지스 그키
510	우 회 전 금 지 표 시	120 100 100 1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	· 자가 우의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교차로 기타 우회전을 금지 하는 지점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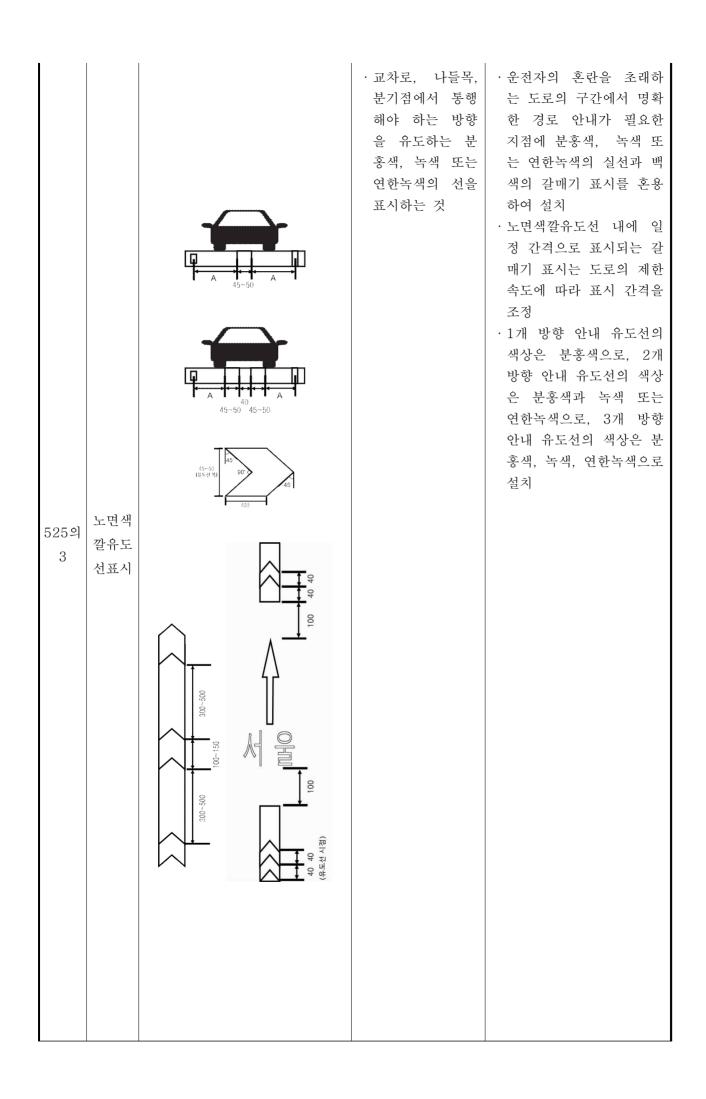
511	좌 회 전 금 지 표 시		· 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교차로 기타 좌회전을 금지 하는 지점에 설치
512	직 진 금 지표시	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 차가 직진하는 것 을 금지하는 것	· 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512의 2	직진 및 좌회전 금 지 표시	140 60 80 80 80 80 80 80 80 80	· 차가 직진·좌회전 하는 것을 금지하 는 것	· 차가 교차로, 일방통행 등에서 직진·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512의 3	직진 및 우회전 금 지 표시	140 80 60 00 00 00 00 00 00 00 00 0	·차가 직진·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하 는 것	·차가 교차로, 일방통행 등에서 직진·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513	좌 우 회 전 금 지 표시	225 <u>80 106 80</u> 	·차가 좌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 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514	유 턴 금 지표시	R=65 115 R=40 000 822 001	· 차마의 유턴을 금 지하는 것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 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515	주차 금지 표시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 에 설치 길가장자리구역에 주차금지 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

				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곳은 보조표지 설치
516	정차 · 주차 금지 표시	H15~20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 금지 를 표시하는 것	실가상사리구역전 표시들 생략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 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및 주 차를 허용한 곳은 안전표 지 설치
516의 2	정차 · 주차 금지 표시	10 11 10 5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516의 3	소방시 설 주변 정차 · 주차금 지표시		영 제10조의3제2 항에 따라 소방용 수시설, 비상소화 장치 또는 소방시 설 등이 설치된 곳	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 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 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 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516의	소방시 설 주변 정차 · 주차금 지표시 (연석)	10.5 33 4.5 41.5 10.5 10.5 10.5 10.5 10.5 10.5 10.5 1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 항에 따라 소방용 수시설, 비상소화 장치 또는 소방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도로구간 연석에 설치 ●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속 도 제한표시	R=35 R=15	는 것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내 또는 도로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2	시 간 제 속 도 제 한 표시		한을 다르게 하는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518	속 도 제 한표시 (보호구 역)	<u>일반포장색</u> 정색 정색 정색 명생	노인・장애인) 안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 애인) 안에 설치 ·도로 노면에 미끄럼방지 포 장(빨간색)을 한 경우에는 바탕색은 미끄럼방지 포장 색, 테두리와 글자의 색상 은 흰색으로 설치
519	서 행 표 시		· 차가 서행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 차가 서행하여야 할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
520	서행표 시	50 15	는 곳을 표시하는 것으로 길가장자리 구역선이나 정차· 주차 금지선, 진로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 된 횡단보도의 전방에서 서 행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는 횡단보도 앞뒤 50미터 이내의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521	일 시 정 지표시	<u> </u>	· 차가 일시정지하여 야 할 것을 표시하 는 것	· 표시의 색상은 진로변경제 한선, 길가장자리구역선, 정 차·주차금지선의 예에 따 른다. · 교차로,횡단보도,철길건널목 등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
522	양 보 표 시	100~200 09-08 000-200 100-200	·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 하는 것	· 교차로나 합류도로 등에서 차가 양보하여야 하는 지 점에 설치
523	주차구 획표시	[설문용] 1 100	조제1호제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도로의 가장자리에 평행· 직각·경사 방식으로 주차 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 ·주차구획의 색상 및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제6조 를 준용한다.

523의	버스정		· 법 제32조제4호	· 버스정류지 가장자리에 평
2	차구획		단서에 따라 버스	
	표시	3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	정류지에서 버스여	
		V 1111 111	객자동차가 정차 할 수 있는 장소를	치 ·정차구획선을 길가장자리구
		교 국민 국민	표시하는 것	역선이나 정차·주차금지구
		999		역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
		1000 mg		우 접하는 곳의 측선은 생 략
		<u> </u>		· 버스정류지 및 버스정차구
		U €H		획선 표시 설치 지점이 도
				로의 곡선부에 위치하는 때 에는 좌측 인접 차선의 곡
				률(曲率, 구부러진 정도)에
		300		평행하게 설치
524	정 차 금		·광장이나 교차로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지 지 대		중앙지점 등에 설	
	표시	200	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	
		60.	하는 것을 금지하	그런 ㅋㅡ그 큰^
		45~150	는 것을 표시하는	
525	유 도 선		<u>것</u> ·교차로에서 통행하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표 시		여야 할 방향을 유	
			도하는 선을 표시 하는 것	에 설치
		h=h=50~100	96 X	
		O hay		
		12 T		
		U $\ell_1 = \ell_2 = 50 \sim 100$		
		$d=30\sim60$	· 교차로에서 좌회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하
	기원기소	$\ell_1 = \ell_2 = 50 \sim 100$	전하려는 차량 이 다른 교통에	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 이 다른 교통을 방해하
525의2	좌회전유 도		방해가 되지 않 도록 녹색등화	지 않는 지점에 설치
5Z5의Z	차로 표시		도록 녹색등와 동안 교차로 안	
	正川	\Diamond	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Diamond	시점들 표시아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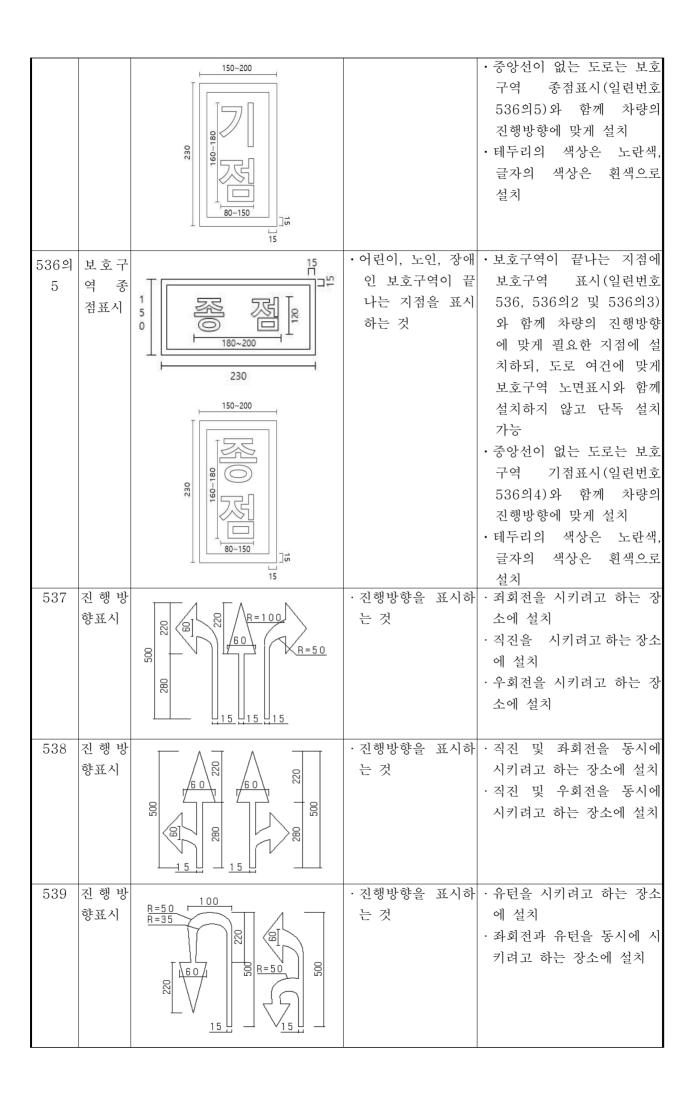


526	유도표	100	통행하여야 할 방향	
		15 J. J. S.	을 표시하는 것	요한 지점에 설치
526의 2	회전 교 차로 양 보선 표 시	d = 30 ℓ, = 6 = 50	회전교차로에 진입 하려는 차량이 양 보해야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할 지점에 설치 양보표지(일런번호 228)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 우측에 함께 설치
527	유 도 표 시	200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 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 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 요한 지점에 설치
528	유도표시	\$5 000 700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 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 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 요한 지점에 설치
529	횡단 보 도 예 고 표시		·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530	정 지 선 표시		·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에
531	안전지 대표시	45~100	·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확보가 필요한 안전지대로 서 이 지대에 들어 가지 못함을 표시 하는 것	로가 분리·합류되는 지점, 장애물이 있는 곳 등 차마

		d /> 15d=1,500° √3 d d 30~40		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
532	횡 단 보 도표시	I 1 2 I 3 I 1 3 I 1 3 I 1 3 I 1 1 1 1 1 1 1 1 1	· 횡단보도임을 표시 하는 것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 ・4m 미만의 도로에는 좌우 통행방향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 가능 ・교차로에서는 대각선으로 설치 가능 ・중간에 보행섬을 두고 설치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 색으로 설치
532의 2	대각선 횡단보 도표시		행 가능한 횡단보 도(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	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 는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의 폭은 4미터 이

533	고 원 식 횡 단 보 도표시	100 45~50 45~50 45~50 60 00 00 00 00 00 00 00 00 0	제 한 속 도 가 30km/h 이하로 제한된 도로에서 횡단보도(오르막 경사면 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임을 표시하는 것	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 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 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534	자전거 횡단도 표시	0017000	· 자전거등의 횡단 도임을 표시하는 것	·도로에 자전거등의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 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 치
535	자 전 거 전 용 도 로표시	7.5 37 14 18 23.5 \$\vert{\text{\$\pi\$}}\$ \\ \vert{\text{\$\pi\$}}\$ \\ \te	· 자전거 전용도로, 차로 또는 전용구 간임을 표시하는 것	
535의 2	자전거 우 선 도 로 표 시	98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	· 자전거 우선도로임 을 표시하는 것	· 자전거 우선도로 시점·종 점 및 구간 내 필요한 지 점에 설치

535의	자전거	120~150cm	·자전거·보행자 겸 용도로임을 표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일련번호 303)가 설
3	· 보행 자 겸		하는 것	치된 장소에 설치
	용도로			
536	어린이	230	· 어림이 또는 영유	·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
	보 호 구 역 표 시		아의 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536의 2	노 인 보 호 구 역 표시	230	· 노인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 노인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 로로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536의 3	장 애 인 보 호 구 역		· 장애인보호구역임 을 표시하는 것	·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통 행로로서, 장애인 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표 시			
		330-200		
536의	보호구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
4	역 기 점표시	15 15 15	인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을 표	에 보호구역 표시(일련번 호 536, 536의2 및 536
			시하는 것	의3)와 함께 차량의 진행 방향에 맞게 필요한 지점
		180~200		에 설치하되, 도로 여건에 맞게 보호구역 노면표시와
		**************************************		함께 설치하지 않고 단독 설치 가능



540	진 행 방 향 및 방 면표시		· 진행할 방향과 방 면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541	진 행 방 향 및 방 면표시	60 60 82 08 83 08 845 08 85 08 87 08 87 08 87 08 88 08	· 진행할 방향과 방 면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542	비 보 호 표시	23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장소에 설치
543	차 로 변 경표시	70. 15	· 차로변경을 표시하 는 것	· 전방에 차로수 감소 또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 등 차로변경을 표시할 필요 가 있는 장소에 설치
544	오 르 막 경 사 면 표시	8 70~100 単44	· 전방 과속방지턱 또 는 교차로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음을 표 시하는 것	

545	보 행 자 전 용 도 로표시	230 005-028	· 보행자전용도로임 을 표시하는 것	· 보행자전용도로의 시점·종 점이나 구간 내 필요한 지 점에 설치
[450]	니 체 키	Z	니체 키 O 서 ㄷ 크 이	- 교체기 (샤드크 () 기저 조
2 2	보 행 자 우 선 도 로표시	230-009-028	· 모맹사우선도도임 을 표시하는 것	·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점·종 점이나 구간 내 필요한 지 점에 설치
546	진 입 금 지 표시	230 230 120-240	 * 차의 진입이 금지 되는 구역, 구간, 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547	일 방 통 행 표시	230	•도로가 일방통행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노면 중앙 에 설치 일방통행 표지(일련번호 326, 327 및 328)가 설치 된 장소에 설치
548	감 속 유 도 표시	5cm 100cm 100cm 100cm 100cm 100cm 100cm	·차량의 감속이 필 요한 구간임을 표 시하는 것	

